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 차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① 화장품류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간소화('25. 6. 30. 시행)
- ② 보세판매장 이용면적 증감시 심의 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25. 9월 시행 예정)
- ③ 우편물 목록통관 서식 및 제출 절차 마련·시행('25. 8. 29. 시행)
- ④ 보세건설장 특허세관 유연화('25. 9월 시행 예정)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①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25. 8. 8. 시행)
-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현지확인 절차 개선('25. 6. 30. 시행)
- ③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절차 개선('25. 6. 30. 시행)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 ①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공개 확대 등('25.12.20. 시행)
- ②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25. 9. 1. 시행)

① 화장품류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간소화

(FTA집행과, 042-481-323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326개)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명서류의 제출을 간소화(8종 → 1종)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확대 (343개) ○ (신규 품목)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포함 총 17개 품목 추가 지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

일반 수출물품(8종)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1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사 례 >

개정전	• 태국으로 마크스팩을 수출하는 S사는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자료인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
개정후	• 태국으로 마크스팩을 수출하는 S사는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자료 총 8종의 서류 제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1종을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 대폭 축소(8종→1종)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

☐ **【시행일】** '25. 6. 30. 시행(「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의2])

② 보세판매장 이용면적 증감시 심의 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637)

종 전

☐ 보세판매장 수용능력증감 신청에 대한 세관장 직권 승인 요건 (제14조 제3항 단서)

- 제4조의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
- 화물 반출입관리 및 CCTV설치 등 보세화물 감시단속상에 문제가 없을 것
- 매장면적 확대(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매장면적 축소

< 사 례 >

개정전	• D면세점은 매장 면적 33㎡로 면세점 특허를 받아 영업하던 중, 매장 면적 10㎡ 확대를 신청하였고,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매장 면적을 확대함.
개정후	• D면세점은 매장 면적 33㎡로 영업하던 중, 매장 면적의 10㎡ 확대를 신청하였고,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으로 매장 면적 확대가 가능해짐

☐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매장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 면세점의 소규모 면적 확장 신청에 대한 절차적 형평성 및 편의성 제고

☐ **【시행일】** '25. 9월 시행 예정(「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개정)

③ 우편물 목록통관 서식 및 제출 절차 마련 ·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43)

중 전	달라지는 내용
☐ 우편물 목록 제출 생략 가능 특송 통관목록 서식을 활용하여 일부 물품만 목록 제출	☐ <u>우편물 목록통관 서식 및 제출 절차를 마련</u> 하여 시행 통관우체국의 장은 접수하는 전체 우편물의 목록 제출

< 사 례 >

개정전	통관우체국은 수출기업 S사가 관세청에 정보 제공을 동의한 일부 수출 물품에 대해서만 특송물품 통관시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을 활용하여 우편물 목록을 제출
개정후	통관우체국은 수출기업 S사가 우편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우편물 목록통관 서식으로 목록 수출

☐ **【기대효과】** 우편물 목록 수출에 대해 적정 수출관리 및 특송업체 목록 통관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출실적 수혜제공 기반 마련

☐ **【시행일】** '25. 8. 29. 시행(「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④ 보세건설장 특허 · 관리 세관 유연화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중 전

☐ 보세건설장 특허(제4조)

• <신설>

< 사 례 >

개정전	A지역에 보세공장을 운영중인 S사는 B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보세건설장을 운영중이며 완공 후 A보세공장으로 통합할 예정이지만, 현재 보세건설장 특허·관리와 수입통관은 B지역 관할세관에 해야해서 A세관과 B세관간 각종 신고오류 등 혼선과 그에 따른 건설 지연 발생
개정후	보세건설장 특허·운영 시점부터 보세공장 특허·운영까지 전과정을 기존 A관할세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신고오류 방지 및 신속한 건설이 가능해짐

☐ **【기대효과】** 보세건설장과 단일보세공장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신고 오류 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비용 절감

☐ **【시행일】** '25. 9월 시행 예정(「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신설)

⑤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73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기준 납세의무자 성명 +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일치 시 통관 가능	☐ 검증 체계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작성했던 발급정보(성명+전화번호)와 신고서에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 + 납세의 무자 성명 + <u>전화번호</u>가 모두 일치 하는 경우에만 통관 가능

< 사 례 >

개정전	A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통 의류 등 138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후 SNS 등을 통해 판매
개정후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체계와 동일하게 일반수입 통관고유부호 검증 수준을 강화하여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차단

☐ 【기대효과】 관세행정 본인 인증 서비스 관리 강화로 선량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행위 예방

☐ 【시행일】 '25. 8. 8. 시행 예정

⑥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현지확인 절차 개선

(FTA집행과, 042-481-3234)

종 전
☐ 현지확인 <u>시작 전날까지</u> 신청인에게 현지확인 통지서 송부

< 사 례 >

개정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A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확인 통지받은 날의 바로 다음 날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임을 통지받음
개정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A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확인 통지받은 날의 5일 후에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임을 사전에 통지받음

☐ 【기대효과】 현지확인 시작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및 권익 보호 제고

☐ 【시행일】 '25. 6. 30. 시행(「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9①)

㉗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절차 개선

(원산지검증과, 042-481-323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대상 ☐ (원칙) 신청인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대상 확대 ☐ (좌 동) ☐ (예외) 영업기밀이 포함된 서류 등 필요한 경우 <u>계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가 관세청장에게 직접 제출</u>
<추 가>	

< 사 례 >

개정전	국내 수입사 A사는 스위스산 물품을 수입하기 전 FTA세율 적용 가능여부를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스위스 수출자 B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원재료내역서, 제조공정도 등을 제공해주지 않아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함
개정후	국내 수입자 A사가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스위스 수출자 B사가 영업기밀이 포함된 심사서류를 관세청에 직접 제출함으로써 B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내 수입자 A사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이 가능해짐

☐ **【기대효과】** 사전심사 제도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수입기업의 안정적인 협정관세 적용을 지원

☐ **【시행일】** '25. 6. 30. 시행(「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7②)

㉘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공개 확대 등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042-481-1164)

종 전
☐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중 신고 정확도의 정정항목(중요/경미)만 공개 ☐ 관세청 자체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관세협력도 평가 ☐ AEO 위주*의 관세협력도 평가 * 예) AM협력도, AEO활용사례나눔대회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관세청 주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AEO가 아니므로 법규준수도에 가점반영*되지 않음 * AEO는 간담회 참석증빙을 AM(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 법규준수도에 가점 반영
개정후	A사는 관세청 주관 간담회 참석 증빙자료를 Uni-pass로 제출하여 법규준수도에 가점으로 반영됨

☐ **【기대효과】** 법규준수 평가제도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고, 관세협력도 자율신청·평가항목 확대로 자율법규준수 견인

☐ **【시행일】** '25. 12. 20. 시행 예정(「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9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심사정책과, 042-481-762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관세법 제27조 제2항)가 있으나, 제출에 관한 세부 지침 부재	□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기업, 제출 자료 종류, 제출 방법 규정 □ 미제출 시 제재조치 적용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 <신설>	• 과세자료 제출 생략 대상 규정 - AEO(수입부분), ACVA(결정물품), 전 년도 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 • 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 - 같은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연 최초 1회만 제출 •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 8개 분야* 규정, 해당 없을 시 ‘미제출 사유서’ 제출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특수관계자 등 •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 -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 제출 • 과세자료 미제출 기업 제재조치 -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 담보제공 생략 중지 -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 등

□ **【기대효과】**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기업, 제출 자료 종류, 제출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신고 정확도 제고

□ **【시행일】** '25. 9. 1. 시행 예정(「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